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19. 7.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문화체육관광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 안 설명서

설 명 자: 문화체육관광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이바지 등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9. 6. 3일부터 6. 2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19. 6.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선진형 공공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여
-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001/2002
------------	----------

제출년월일: 2019. 7. 4.
제 출 자: 달서구청장
(문화체육관광과장)

1. 제안이유

-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9. 6. 3. ~ 6. 24.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클럽”이란 주 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있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포츠클럽에 한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제5조의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령 】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